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11

언 론 사 주식회사 경북신문사(경북신문)
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345, 경북신문 빌딩 3층
대표자 사내이사 박준현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 23일자 1면 「최기문 선두에 김병삼 뒤이어, 시정 운영 긍정적 57.7% 달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천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에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3. 1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12

언 론 사 주식회사 담양자치신문사(담양자치신문)
전남 담양군 죽녹원로 47, 2층
대표이사 김환철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 28일자 5면 「담양군수 입지자 여론조사 ‘6번’ 모두 1위 정철원, 2위 박종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담양군수)와 관련한 여러 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3. 1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13

언 론 사 주식회사 하남신문(하남신문)
경기 하남시 대청로 15, 오피스텔트레벨 319호
대표자 사내이사 김미라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 26일자 1면 「하남시를 “미래의 AI특화도시”로 만들겠다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한태수 출마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하남시장)와 관련하여, 하남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 소식을 보도하며 핵심 공약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3. 1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14
언 론 사 주식회사 국제뉴스(국제뉴스)
서울 송파구 동남로 103, 청송빌딩 2층
대표이사 김영규

심의대상기사 1. 2026년 2월 10일자 전국면 「유정근 前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주시장 출마선언!!」 제하의 기사
2. 2026년 2월 23일자 전국면 「국민의힘 정용근 충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짜임새 단단한 자립 도시 도약”」 제하의 기사
3. 2026년 2월 25일자 전국면 「33년 공직 경험...6·3 지선 출마 공식 선언한, 김상규 충주시장 예비후보」 제하의 기사
4. 2026년 2월 26일자 전국면 「“충주 미래 활짝 열겠다”...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 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
5. 2026년 3월 3일자 전국면 「권혁중 ‘중원제일문’ 건립하겠다’...충주시장 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주시장 및 충주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만 출마 선언 기자회견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해당 정당 및 여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3. 1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박종은
김박한
신김이
장정
홍은기
우형보
송혜
래국태
천열
철연
진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15

언 론 사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내외뉴스통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1149호
대표자 사내이사 김광탁

심의대상기사 2026년 3월 3일자 전국면 「공영민 고흥군수, 인생 역전의 아이콘....파란만장 걱정의 인생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고흥군수)와 관련하여, 고흥군수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인생사를 보도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우호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3. 1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16

언 론 사 주식회사 뉴스토마토(뉴스토마토)
서울 마포구 양화진4길 32, 이토마토빌딩
대표이사 정광섭

심의대상기사 1. 2026년 2월 23일자 5면 「‘명의 남자’ 박찬대, 인천 탈환 보인다」 제하의 기사
2. 2026년 3월 3일자 13면 「적수 없다 박찬대, 인천시장 ‘청신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천시장)와 관련하여,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기사 제목에서 ‘적수 없다’ 등의 표현으로 보도하고, 내용에 해당 예비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우호적으로 부각하여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3. 1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17

언 론 사 대경일보 주식회사(대경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8
대표이사 남찬교, 허경태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 13일자 13면 「“포항 성공 이끈 강한 추진력으로 ‘경북 중흥’ 위해 헌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와 관련하여, 경북도지사에 출마하
는 전 포항시장의 주요 이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특집기획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실어
부각 보도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3. 1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칼럼 등을 게재한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18

언 론 사 주식회사 경상매일신문사(경상매일신문)
경북 포항시 북구 불종로28번길 2
대표이사 천기화

심의대상기사 [별지 1] 기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경상매일신문사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경상매일신문 3면에 [별지 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2월 12일자 기사 <구미 시청 앞 대형 현수막 게시>)와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현저하게 적게 다뤘고, 이는 예비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3. 1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박종은
김박한
신김이
장정
래국태
천열철
연진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심의대상기사 목록

1. 2026년 2월 12일자 2면 「이강덕, 박정희 ‘오마주’...뉴트로 전략 승부수」 제하의 기사
2. 2026년 2월 25일자 3면 「이강덕 “도지사 되어 TK 통합 제대로 추진”」 제하의 기사
3. 2026년 2월 26일자 3면 「이강덕 “경산을 AI로봇산업 메카로 도약”」 제하의 기사
4. 2026년 2월 27일자 3면 「이강덕, ‘안심의료·춤춤복지 경북’ 공약 발표」 제하의 기사
5. 2026년 3월 3일자 3면 「이강덕, 5호 공약 ‘함께 크자! 경북’ 발표」 제하의 기사
6. 2026년 3월 9일자 3면 「공천 신청 마친 이강덕, 주말 강행군 시작」 제하의 기사
7. 2026년 3월 10일자 3면 「이강덕 “경주 건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제하의 기사
8. 2026년 3월 11일자 3면 「이강덕, 경북 맞춤 ‘왕사남 프로젝트’ 가동」 제하의 기사
9. 2026년 3월 13일자 3면 「이강덕 “한국시리즈 경선 승리 공천권 획득”」 제하의 기사

[별지 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내용 : 본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예 출마 예정인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하여(2026년 2월 12일자 2면 「이강덕, 박정희 '오마주'...뉴트로 전략 승부수」 등 9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19

언 론 사 주식회사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
경북 포항시 남구 중섬로 83, 3층
대표이사 김영곤

심의대상기사 [별지 1] 기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일간경북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일간경북신문 7면에 [별지 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2월 12일자 기사 <시민들 “박정희 연상 된다”>)와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거의 다루지 않았고, 이는 예비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3. 19.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중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심의대상기사 목록

1. 2026년 2월 3일자 1면 「‘동부권 대망론’ 깃발 든 이강덕, 도지사 출마」 제하의 기사
2. 2026년 2월 9일자 1면 「이강덕 ‘경북 권력지도’ 첫 균열 났다」 제하의 기사
3. 2026년 2월 12일자 7면 「이강덕, 박정희 ‘오마주’ 현수막·영상… ‘뉴트로 전략」 제하의 기사
4. 2026년 2월 24일자 7면 「이강덕 “구미에 AI 고속도로 조성”」 제하의 기사
5. 2026년 2월 25일자 7면 「이강덕 “TK 통합법안, 전남·광주에 27전 27패”」 제하의 기사
6. 2026년 3월 3일자 7면 「이강덕, 5호 공약 ‘함께 크자 경북’ 발표」 제하의 기사
7. 2026년 3월 11일자 7면 「이강덕 “건천에 SMR·미래차 경제자유구역 추진”」 제하의 기사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내용 : 본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예 출마 예정인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하여(2026년 2월 3일자 1면 「'동부권 대망론' 깃발 든 이강덕, 도지사 출마」 등 7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